

# 기안용지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분류기호  | 문서번호                  | (전화번호 981-6564) | 전결 규정            |
|   | 도정 442~312/2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조 결 사항<br>전 결 사항 |
| 처리기간  |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청 장           | 시 장              |
| 시행일자  |                       | 전 결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보존년한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보 조 기 관   | 도시정비국장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총무과장<br>기획감사계장   |
|   | 도시정비과장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도시계획계장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기안책임자   | 김 학 수                 | 19.12.20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경 유 수 실 함 조   | 각 안 창 조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제 목   |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 지적승인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(제 1 안) 내 부 결 재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1. 서울 특별시 고시 제 503 호 (19.12.5) 로 결 정 고 시 된 당 구 수 유 등 264-3 외 3 필 지 의 도 시 계 획 시 설 (여 객 자 동 차 정 류 장) 도 시 계 획 법 제 13 조 와 건 설 부 고 시 제 41 호 (19.3.16) 권 한 위 임 사 황 에 따 라 지 적 승 인 고 시 권 하 린 다.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(제 2 안) 고 시 안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서울 특별시 고시 제 호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 지적승인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1. 서울 특별시 고시 제 503 호 (19.12.5) 로 결 정 고 시 된 도 시 계 획 시 설 (여 객 자 동 차 정 류 장) 을 다 음 과 같 이 지 적 승 인 하 였 기 도 시 계 획 법 제 13 조 및 건 설 부 고 시 제 41 호 (19.3.16) 의 권 한 위 임 사 황 에 의 거 이 름 고 시 권 다.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2. 관계 도 서 는 도 봉 구 청 도 시 정 비 과 와 시 민 봉 사 실 에 각 각 비치 하 여 토 지 소 유 자 및 이 해 관계 인 에 게 보 인 다.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원안도봉구청도시정비과보관

도시계획과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

· 지적 승인 조서

| 구분 | 시설명      | 위치             | 면적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신설 | 여객자동차정류장 | 수유동 264-3외 3필지 | 2638㎡ | 삼영교통 |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상략)

(제 3 안)

수신: 건설부장관 (서울특별시)      발신: 시장 (구청장)

제목: 등 건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3호 (19.12.5)로 결정 고시된 도봉구 수유동 264필지의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을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 (19.3.16)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안 및 도면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보고합니다  
첨부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끝

(제 4 안)

수신: 총무처장관 (서울특별시)      발신: 시장 (구청장)

참조: (문화공보관)

제목: 관(시)보 게재 의뢰

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게재를 의뢰하의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(시)보 게재구분: 고시

나. 관(시)보 게재 전명: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지적승인 고시

첨부: 고시문 2부 (1부) 끝

(제 5 안)

수신: 서울특별시      발신: 구청장

참 조 : 시인과장 :

제 목 : 관인 날인의뢰

1.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(여객 자동차 정류장) 지적승인 고시를 위하여 관인 날인을 의뢰합니다

첨 부 : 제 3안 전설부 장관에게 송부하는 공문 1부

제 4안 총무처 " " "

(제 6 안)

수 신 : 시인봉사실장 건축과장. 토목과장      발 신 : 구청장

제 목 : 등      건

1. 관내 수유동 24-3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(여객 자동차 정류장)을 별첨 고시안 및 도면과 같이 지적승인 하엿기 홍보하니 도면 정리하고 업무에 착수 없도록 할것

첨 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(제 7 안)

수 신 : 수유동 24-3 삼영교통(주) 대표김기수      발 신 : 구청장

제 목 : 등      건

1. 귀하가 당구에 제출하신 도시계획시설 (여객 자동차 정류장)이 별첨 고시안 및 도면과 같이 지적승인 고시 되었기 홍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     끝

